

의안제출	제 47 호
의결 년 월 일	1995 (제 49 회)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출 년월일	1995년 12월 13 일

기 획 실 장 심 사 필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1995년 12월 13일

제출자 : 보은군수

□ 제 안 이 유

-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하여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제정.

□ 주 요 골 자

- 투자기금 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군세 결산액의 10% 이내), 경영수익사업 운용수입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기타등으로 한다(제3조)
- 회계운용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잉여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제4조)
- 투자기금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을 한다(제6조)
- 사업선정, 대상사업, 운용계획, 생산물 판매가격은 군정조성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제7조. 제8조. 제11조)
- 투자기금특별회계 회계관리는 예산회계법 및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세입, 세출 절차에 의한다(제10조)
-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 군수는 지방의회의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12조)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3조 ----- 따로붙임
- 지방재정법 제41조 ----- 따로붙임
- 지방재정법 제110조 ----- 따로붙임
- 지방재정법 제112조 ----- 따로붙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따로붙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 따로붙임

□ 내 용

-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 사전예고 결과(생략)

□ 기타참고자료

- 관계 법령발췌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자원 확보를 위한 기금적립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한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주자원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기금의구성) ① 이 조례에서 보은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은군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 기금의 구성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경영수익사업의 운용수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지방채
5. 기 타
6. 기금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군수는 전년도 군세 세입결산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분에 한하여 전입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할수 있다.

제 4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구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용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3조 제2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기 타

④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비 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잉여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단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은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5 조(회계년도) 이 조례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년도와 같이 한다.

제 6 조(회계관계공무원관직지정) 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둔다.

1. 기금특별회계 운용관 : 부군수

2. 분 임 운 용 관 : 담당실과장

3. 분 임 지 출 원 : 담당계장

② 기금 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관계 장부를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관리한다.

제 7 조(사업선정) ① 군수는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실행가능성 과 채산성이 있는 사업을 매년 조사하여 지역개발의 유발효과와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검토 분석을 하여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② 보은군정조정위원회는 경영수익사업선정에 관한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의 유발효과에 관한 사항

5. 기금 조성 및 투자비율에 관한 사항

제 8 조(대상사업) ① 제 3 조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 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등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제고할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을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지 조성개발 사업
4. 임산물 생산 소득증대 및 유실수 조성사업
5. 각종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및 판매사업
6. 토지 이용기반 조성 및 개발사업
7.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경영수익성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다만 타 법률, 조례등으로 정해진 사업은 제외한다.

제 9 조(운용계획)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투자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기금투자 경영수익사업 시행 운용계획을 수립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추진토록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경영수익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기금 운용상 필요한 행.재정지원 계획

제 10 조(회계관리) 투자기금 회계관리는 제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 한다.

제 11 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군정조정 위원회의 의결된 가격으로 한다.

제 12 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 예산심의와 결산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와 委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4節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第134條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관계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第5節 補 則

第136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第8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주 46)

③繼續費의 年度別 所要經費의 금액중 당해年度내에 支出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繼續費의 事業完成年度까지 차례차례로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越하는 때에는 그 移越하는 科目別 금액은 移越豫算으로 配定된 것으로 본다.

第4章 決算

第41條 (歲入・歲出決算의 작성) 歲入・歲出의 決算은 歲入・歲出豫算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歲 入

가. 歲入豫算額

나. 徵收決定額

다. 收納額

라. 不納缺損額

마. 未收納額

2. 歲 出

가. 歲出豫算額

나. 前年度 移越額

다. 豫備費使用額

라. 轉用등 增減額

마.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超過支出額

바. 豫算現額

사. 支出額

아. 다음 年度 移越額

자. 不用額

第42條 (決算上 剩餘金의 처리) 地方自治團體는 每會計年度에 있어서 歲入・歲出 決算上 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控除한 剩餘金은 그 剩餘金이 생긴 年度의 다음 年度까지 歲出豫算에 拘碍됨이 없이 地方債의 元利金의 償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法律에 의한 것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金

第5章 收 入

第43條 (歲入의 徵收와 收納) 地方稅 기타의 歲入은 法令과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 또는 收納하여야 한다.

第44條 (歲入의 徵收機關과 徵收의 방법) ①地方稅 기타의 歲入의 徵收는 地方自

(추 56)

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108條 (管理의 방법등)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發生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후 3月 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運用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

(추 56)

115條 및 會計關係職員 등의 責任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新設 94·12·22>

第11章 會計關係公務員

第111條 (出納員) ①出納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소속公務員중에서 任命한다.

②出納員은 法令·條例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現金 또는 物品을 出納·보관하여야 한다.

③出納員은 收入金出納員·日常經費出納員·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 및 物品出納員 등으로 나눈다. <改正 91·12·31>

第112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徵收官·經理官·財産管理官·物品管理官·債權管理官·債務管理官·支出員 또는 出納員과 그 代理者·分任者등 (이하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任命 또는 委任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第11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計關係公務員의 事務의 전부를 代理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任命 또는 委任할 수 있다.

第11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 國家機關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을 당해 所屬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會計關係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關係公務員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며, 會計에 관한 法令중 당해 事務의 취급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15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①會計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物品을 사용하는 公務員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용중인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出納員과 그 出納事務를 代理 또는 分任하는 者가 그 보관에 속하는 現金 또는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第116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會計關係公務員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추 56)

2. 여 비

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

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6.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제37조 (세출예산의 이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이월을 필요로 하는 과목별 경비의 금액

2. 제 1 호의 경비의 금액중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3. 제 1 호의 경비의 금액중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 및 당해 경비의 현년도와 다음 연도의 예산 과목

4. 제 1 호의 경비의 금액중 불용액

5. 이월사유

제 4 장 결 산

제38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9·23, 95·5·16>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 제4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후 61)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3.9.2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3.9.23>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57조 (출납원의 장부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감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주 41)

